

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홀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9.(목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
[보건소 위생과]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4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(안)

(단위:천원)

기 금 명	2021년도말 조성액 ㉠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2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-㉣	증 감 ㉢=㉡-㉠
		수입㉢	지출㉣		
식 품 진 흥 기 금	924,335	44,289	340,330	628,294	△296,041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」

5. 검토의견

가. 기금개요

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2000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되었음

- 1) 재원조성 : 과징금,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, 기금운용 수익금 등
- 2) 지원기준 :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, 식품위생 교육 홍보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, 좋은 식단 실천 등 음식문화 개선
- 3) 지원대상 : 음식점 시설 및 화장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,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이 필요한 자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,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수준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자

나. 기금조성 및 운용

○ 2022년도 자금수지총괄

(단위:천원)

수입 계획						지출 계획			
계	보조금	융자금 회수	예치금 회수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비용자성 사업비	융자성 사업비	예치금
968,624	11,000	3,780	924,335	20,053	9,456	968,624	190,330	150,000	628,294

○ 2021년도 운용실적

(단위:천원)

수입 계획					지출 계획			
계	보조금	융자금 회수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비용자성 사업비	융자성 사업비	기타
86,074	24,000	26,116	11,040	24,918	353,330	182,647	150,000	20,683

다. 검토결과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·의결을 얻고자 함
-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됨

붙임 : 1.관계법령 1부.

관계법령

1) 「지방재정법」

제48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, 재정지원을 받는 자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(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「국가재정법」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2)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제54조의2(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·낭비에 대한 주민감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,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)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.

3) 「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

제16조의2(지방예산낭비사례 등 공개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·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.